

부산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가단31165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2. 9. 20.

**판결 선고**2022. 10. 18.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312,79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6.부터 2022. 3.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2. 6. 23.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2. 1. 19.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22. 1. 19. 접수 제2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청약에 따라 피고 B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아래 <표 1>과 같이 체결한 주계약상의 채무 또는 의무를 피고 B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피고 B와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한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 &lt;표 1. 주계약 내역&gt;

|   |             |       |                          |            |
|---|-------------|-------|--------------------------|------------|
| E | 농업회사법인 (주)D | 거래약정서 | 2021. 2. 8.~ 2022. 2. 7. | 20,000,000 |
|---|-------------|-------|--------------------------|------------|

## &lt;표 2. 보증보험 내역&gt;

|   |             |            |                          |             |             |
|---|-------------|------------|--------------------------|-------------|-------------|
| E | 농업회사법인 (주)D | 20,000,000 | 2021. 2. 8.~ 2022. 2. 7. |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 2021. 2. 8. |
|---|-------------|------------|--------------------------|-------------|-------------|

나. 피고 B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주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의 2022. 1. 21.자 보험금 청구에 따라 같은 해 2. 15.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15,312,797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이행보증보험 약정서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원고가 보증하는 보험계약자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고, 지연손해금은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는 연 9%이다.

라.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C에게 2022. 1.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22. 1. 19. 접수 제2783호로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5,312,79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6.부터 2022. 3.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6. 23.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보험금지급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피고 B의 의뢰로 소외 회사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일자인 2021. 2. 8.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이었으므로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B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 10. 2. 거래를 중단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외상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왔으므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누나인 피고 C에게만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에 2022. 1. 18.자로 차용금액 3,00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피고 C의 계좌에서 2022. 1. 18.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 B은 위 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F'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돈 일부를

사업 용도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피고 B의 채무 규모(약 4억 원에 이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피고 B이 자신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이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정우

별지